



# 기업방어의 새로운 방패: 변호사-의뢰인간 비밀유지권, 비 닉특권 (ACP) - 조사의 칼날 앞, 의뢰인의 방어권은 어디 까지 보호될까 -

2025.12.19

## 1. 변호사-의뢰인 비밀유지권(ACP)의 의의

변호사와 의뢰인의 비밀유지권(Attorney-Client Privilege, 이하 ‘ACP’)은 변호사와 의뢰인이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와 관련하여 주고 받은 정보 및 문서 등을 비밀로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.

현행 변호사법 제26조는 ‘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’고 규정하여, 변호사에게 포괄적인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, 의뢰인의 비밀유지권은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. 반면, 미국, 영국, 일본 및 유럽연합(EU) 등은 의뢰인에 대해서도 ACP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, 이로 인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 회원국 중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ACP를 제도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.

대표적으로 미국의 ACP 제도를 살펴보면, 미국은 구두 대화에 한정하지 않고, 서면 문서, 이메일, 문자메시지 등 모든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에 비밀유지특권을 적용하고 있습니다. 이 비밀유지특권은 의뢰인에게 귀속되며, 의뢰인은 소송 등에서 증거개시(discovery), 증언(deposition), 소환장(subpoena)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이 비밀유지특권은 의뢰인이 범죄 또는 사기 행위를 실행 또는 은폐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률자문을 구한 경우, 비밀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제3자가 동석한 경우 등에는 적용이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습니다.

## 2. ACP 도입을 위한 변호사법 개정 논의 진행 경과

### 가. 논의 배경

ACP 제도의 도입은 과거부터 꾸준히 논의되어 왔으나,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대선공약 중 하나로 ‘변호사의 공공성 강화 - 변호사 비밀유지권 법제화’를 제시하면서 본격적으로 검토되기 시작하였습니다. 최근 2025. 11. 13. 발표된 한미 공동 설명자료(Joint Fact Sheet)에서, 우리 정부는 ‘경쟁 관련 절차에서 변호사-의뢰인 비밀유지권의 인정 등을 포함한 추가적인 절차적 공정성 규정을 마련할 것을 약속<sup>1)</sup>하였기 때문에 ACP의 도입은 이제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.

## 나.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경과

이러한 배경 하에서, ACP 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안이 2025. 12. 18.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. 위 개정안에는 ( i ) 변호사와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려는 자는 그 사이에서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에 관한 조력을 제공하거나 받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비밀인 의사교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고, ( ii )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과 관련하여 소송, 수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작성한 서류나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, ( iii ) 변호사가 의뢰인 등과 공범관계에 있거나 의뢰인 등의 증거인멸, 범인은닉, 장물취득 등 범죄 기타 위법행위에 관여하거나, 의뢰인 등이 의사교환 내용 또는 서류나 자료를 위법행위에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한 경우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의사교환 내용 또는 서류나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

### 변호사법 일부개정안

#### 제26조의2(비밀유지권 등)

- ① 변호사와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려는 자(이하 이 조에서 “의뢰인등”이라 한다)는 그 사이에서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에 관한 조력을 제공하거나 받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비밀인 의사교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② 변호사와 의뢰인은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과 관련하여 소송, 수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작성한 서류나 자료(전자적 형태로 작성관리되는 것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의사교환 내용 또는 제2항에 따른 서류나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.
  - 의뢰인등의 승낙이 있는 경우
  - 변호사가 의뢰인등과 공범관계에 있거나 의뢰인등의 증거인멸, 범인은닉, 장물취득 등 범죄 기타 위법행위에 관여하거나, 의뢰인등이 제1항에 따른 의사교환 내용 또는 제2항에 따른 서류나 자료를 위법행위에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한 경우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
  - 변호사와 의뢰인등 사이에 발생한 분쟁과 관련하여 변호사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방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  -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
#### <부칙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비밀유지권 등에 대한 적용례) 제26조의2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제1항에 따른 의사교환 내용 또는 제2항에 따른 서류나 자료(전자적 형태로 작성관리되는 것을 포함한다)에 대하여도 적용된다.

전체회의를 통과한 위 대안은 특히 ‘증거능력의 배제’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, 이는 미국의 ACP 제도와 가장 큰 차이점이고, 향후에도 추가적인 논의가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. 미국은 현재 형사·민사 소송은 물론, 행정조사 절차에도 ACP가 인정되는 의사소통과 문서 및 자료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.

ACP가 인정되는 자료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배제되지 않는다면, 이는 사실상 ACP를 무력화시키는 요소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

## 다.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법무부의 수정의견

한편, 위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기까지, 제1소위원회 회의에서는 다각도의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. 제22대 국회에서

는 이견태, 김병기, 서영교, 김용민 의원이 ACP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 대표 발의하였는데, 위 일부법률개정안<sup>2</sup>은 2025. 12. 5.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. 이후 법무부는 2025. 12. 12. 소위원회 회의에서 구체적인 수정의견을 제시하였고, 소위원회는 법무부의 수정의견을 심의하여 소위원회 차원의 대안을 마련한 후 전체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.

제26조의2	법무부 수정의견	제1소위원회 대안
제1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변호사-의뢰인 특권<sup>1)</sup> <i>1)미국 사례 반영</i></li> <li>● 규정: <u>권리가 있다</u></li> <li>● 주체: 변호사, 의뢰인, 의뢰인이 되려는 자(수임계약 전)</li> <li>● 대상: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<sup>2)</sup>, 의사교환 내용, 비밀<sup>3)</sup> <i>2)변호사법 표현 그대로 사용, 미국과 동일하게 비법률적 업무 제외, 3)의사교환 당시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비밀일 것 요구됨</i></li> <li>● 행위: 공개하지 아니할 권리<sup>4)</sup> <i>4)의사교환 당시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비밀일 것 요구됨, 공개에는 제출과 열람이 모두 포함됨</i></li> </ul>	규정: ‘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’로 수정
제2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업무성과물 원칙</li> <li>● 규정: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</li> <li>● 주체: 변호인, 의뢰인<sup>1)</sup> <i>1)미국과 동일하게 의뢰인이 되려는 자는 제외됨</i></li> <li>● 대상: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과 관련하여 소송, 수사, 조사<sup>2)</sup>를 위하여 작성한 서류나 자료 <i>2)공정위의 행정조사 같은 부분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조사까지 규정함</i></li> <li>● 단서: <u>필요성의 예외(1항의 변호사-의뢰인 특권 부분이 제외됨을 명확하게 규정함)</u></li> </ul>	단서: 삭제
제3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비밀유지권이 인정되지 않는 예외사유</li> <li>● 1호: 의뢰인의 승낙</li> <li>● 2호: 범죄 관련된 공익상 필요<sup>1)</sup> <i>1)공범 관계나 증거인멸 등 위법행위 부분은 변호사가 직접 범죄나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 임, 의뢰인 등이 의사교환 내용, 서류나 자료를 위법하게 사용하거나 사용하려 한 경우란 의뢰인이 변호사를 속이는 경우임.</i></li> <li>● 3호: 변호사 방어권</li> <li>● 4호: 법률상 특별한 규정 있는 경우</li> </ul>	
기타 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제출받은 물건의 포함여부 제외함<sup>1)</sup> <i>1)제출받은 물건을 모두 포함할 경우, 제출을 원하지 않는 물건 또는 증거물을 변호인에게 보관시켜 범죄 은닉의 결과 발생함</i></li> <li>● 증거능력 배제 별도로 규정하지 않음<sup>2)</sup> <i>2)민사행정은 자유심증주의, 형사는 위법 수집 배제 원칙 규정되어 있어 별도로 규정하지 않음</i></li> <li>● 승낙 강요행위 처벌규정 제외<sup>3)</sup> <i>3)외국 입법례 없음</i></li> <li>● 부칙: 공포 후 1년 후 시행<sup>4)</sup>, 적용례(시행 이전 의사교환 내용 및 작성 서류</li> </ul>	

	<p>와 자료도 적용됨)<sup>5)</sup>  <sup>4)</sup>소송법 개정 필요, 디스커버리 및 상생협력촉진법 도입 시점(1년 뒤) 고려함, <sup>5)</sup>개정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과 작성된 서류, 자료에 대하여, 공개 요구받는 시점이 시행 이후일 경우 적용됨</p>	
--	--	--

### 3. 향후 일정

위 대안은 조만간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에 부쳐질 것입니다. 만약, 위 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,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법률로 공포되고, 부칙에 따라 일정 유예기간 경과 뒤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.

### 4. 결론

변호사법의 개정으로 ACP제도가 법제화되면, 법률상 권리로서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비밀스러운 의사교환을 보호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, 기업 등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변호사 직무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제고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.

다만, ACP는 국내에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, 향후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예외 사유 등은 하위 규정 및 판례를 통해 법리를 정립해 나가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습니다. 기업과 개인은 ACP에 따른 보호를 받기 위해 법률관련 문서 작성 목적을 명확히 하고, 관련 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.

<sup>1</sup> The Republic of Korea commits to provide additional procedural fairness provisions in competition proceedings, including the recognition of attorney-client privilege.

<sup>2</sup> 4건의 각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뢰인과 변호사 간 비밀유지권을 법률에 명시한다는 점에서는 공통된 목적을 가졌으나,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, 보호 대상의 범위, 예외사유, 증거능력, 조문 형식 등 세부 사항에서는 차이가 존재하였습니다.

### 관련구성원

**민일영**

변호사

02-316-4701

iymin@shinkim.com

**장영수**

대표변호사

02-316-2803

ysojang@shinkim.com

## 김현진

변호사

02-316-4246

hjikim@shinkim.com

## 김종수

변호사

02-316-1678

jsokim@shinkim.com

## 우승준

변호사

02-316-4680

sjwoo@shinkim.com

## 임보경

변호사

02-316-4041

bklim@shinkim.com

## 이창훈

변호사

02-316-4645

chlee@shinkim.com

## 오재청

변호사

02-316-1782

jcoh@shinkim.com

## 문종열

변호사

02-316-1750

jyulmoon@shinkim.com

## 장준영

변호사

02-316-4985

jyojang@shinkim.com

## 황현일

변호사

02-316-4453

hihwang@shinkim.com

## 이정환

변호사

02-316-4015

jhwlee@shinkim.com

## 백대용

변호사

02-316-4630

dybaek@shinkim.com

## 이정렬

변호사

02-316-4597

jyeollee@shinkim.com

## 채지민

변호사

02-316-1649

jmchae@shinkim.com

## 변주연

변호사

02-316-2834

jybyun@shinkim.com

## 조준호

변호사

02-316-1892

chcho@shinkim.com

## 장우진 (Daniel Woojin Chang)

외국변호사

02-316-7285

wjchang@shinkim.com

## 조권

전문위원

02-316-4708

kcho@shinkim.com

## 장승연 (Maria Chang)

외국변호사

02-316-4165

mariachang@shinkim.com

## 장대섭

고문

02-316-4639

dsjang@shinkim.com

## 김경희

세무사

02-316-4325

kheekim@shinkim.com